

0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쟁겨 놓자.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다.

●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text{①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매입비용}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충당금} \cdot \text{준비금 환입액}$$

$$\text{② 한도} :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 + \text{충당금} \cdot \text{준비금 환입액}$$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frac{1}{2}$ 을 곱하여 계산

** 2018 귀속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 배, 복식부기의무자 3.2 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도 증빙확인경비가 있으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 소득금액 적용 가능하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text{충당금} \cdot \text{준비금 환입액}$$

이때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 ·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업종구분	귀속연도	2018년 귀속
	기준수입금액	2017년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증개업	3,600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400만 원	

[적용례]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2018년 5월(2017년 귀속) 신고 시 2016년 귀속 기준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 주요경비의 범위

- 1) 매입비용 : 상품 · 제품 · 재료 · 소모품 ·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된다.
- 2)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 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 3)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 보관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의2
국세청 고시 제 2015-9호